

서울특별시 서울교통공사 출자 동의안

심 사 보 고

| | |
|-----------|-----|
| 의 안 번호 | 888 |
|-----------|-----|

2023년 6월 21일
교 통 위 원 회

1. 심사경과

가. 제 안 자 : 서울특별시

나. 제안일자 : 2023년 5월 30일

다. 회부일자 : 2023년 6월 1일

라. 상정일자

○ 제319회 정례회 제2차 교통위원회(2023년 6월 21일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가. 제안사유

- 서울시는 시민들에게 더욱 안전하고 편리한 지하철 이용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지하철 분야에 출자기관인 서울교통공사를 운영하고 있음
- 이에 시민 안전 제고 및 지하철 이용환경 개선을 위하여 지하철 노후시설 재투자, 승강편의시설 설치 등 주요 사업을 2023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
- 서울교통공사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하여 차입금액 중 일부를 현금출자를 통해 상환할 수 있도록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사전에 그 동의를 얻으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 출자개요 】

- 대상기관 : 서울교통공사
- 출자규모 : 2,464억 원 (안전투자사업 914억, 차입금상환 1,550억)
- 추진근거 : 「지방재정법」 제18조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출자현황 】

① 주요 안전투자사업 : 914억 원

(단위 : 천원)

| 구 분 | 본예산 | 추경안 | 반영액 | 비 고 |
|---------------------|-------------|------------|-------------|------------------------------------|
| 계 | 302,136,194 | 91,389,755 | 393,525,949 | |
| 지하철 1~4호선 노후시설 재투자 | 39,226,600 | 2,513,455 | 41,740,055 | 국비 미매칭분 일부(통신) - 전체 5개분야 20개 사업 |
| 지하철 5~8호선 노후시설 재투자 | 39,950,500 | 3,500,000 | 43,450,500 | 노후 신호설비 추가 - 전체 6개분야 14개 사업 |
| 지하철역 승강편의시설 설치 | 49,958,000 | 19,134,000 | 69,092,000 | 1동선 13역 공사비 증액 |
| 서울교통공사 지하철 공기질 개선 | 8,003,310 | 15,182,300 | 23,185,610 | '22년 국비 미매칭분 |
| 서울교통공사 노후전동차 교체(국비) | 73,731,504 | 51,060,000 | 124,791,504 | 국비매칭(6차, 5.8호선 298칸) |
| 기타사업 (출자변동 없음) | 91,266,280 | - | 91,266,280 | 지하철역 화장실, 캐노피 등 |

② 서울교통공사 채무상환 : 1,550억 원

【 출자의 필요성 】

- 서울시 지하철은 하루 6백만명 이상의 시민들이 이용하는 가장 대중적인 교통수단이나, 개통 후 30년 이상 경과됨에 따라 시설 노후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고, 특히 「중대재해처벌법」 상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시설개선이 필요함
- 반면 수송원가(1,904원) 대비 평균운임(1,014원) 비율이 53%('22)에 불과하여 지하철 운행에 따라 손실이 발생하고 있을 뿐 아니라 국가 정책 및 관련 법에 따른 공익서비스 비용('22년 3,152억 원) 부담으로 서울교통공사 재정여건은 매우 열악한 상황임

- 이에, 노후시설 개선 등 안전관련 사업을 단절없이 추진하고, 서울교통공사의 차입금 중 일부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상환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출자에 대한 동의를 얻고자 함

3. 참고사항

가. 출자 대상기관 개요(현황)

기관현황

- ▶ 설립일자 : 2017. 05. 31
- ▶ 설립목적 : 지하철 건설·운영(서울지하철 1~8호선) 및 부대사업
도시교통 발전과 시민복리 증진
- ▶ 위 치 : 서울시 성동구 천호대로 346(용답동)
- ▶ 조 직
 - 본 사 : 6본부, 6실, 42처 / 현 업 : 1부문, 2원, 1단, 10센터, 58사업소
- ▶ 인 원 : 정원 16,387명/현원 16,227명 ('23.3.31.기준)

나. 예산조치 : 2023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세출예산 및 2023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에 서울특별시 서울교통공사 출자금 반영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끝.

4.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장훈)

가. 동의안의 개요

- 동 동의안은 서울교통공사의 원활한 사업 추진 및 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해 노후시설 재투자 등의 주요 사업들을 2023회계연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고 ‘서울특별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활용하여 차입금액 일부를 서울교통공사에 출자하기 위해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임

※ 참고 :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나. 검토의견

■ 출자 동의안 의의

- 「지방공기업법」 제49조1)에 따라 설립된 서울교통공사는 자본금의 전액을 서울시가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하도록 「지방공기업법」 제53조2)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재정법」 제18

1) 「지방공기업법」 제49조(설립)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2) 「지방공기업법」 제53조(출자) ① 공사의 자본금은 그 전액을 지방자치단체가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한다.

조제3항3)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하고 있음

- 또한 「서울특별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6조 제2항제2호4)에서는 시장이 특별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사채 또는 공단체의 상환을 위해 출자금,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서울특별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하 기금)으로 운용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음

- 이에 동 동의안은 '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통한 출자 내용과 필요성 등을 고려한 출자 동의 여부를 시의회에서 미리 승인받고자 하는 것으로 출자 금액은 향후 예산편성 절차에 따라 의회의 심의⁵⁾를 통해 최종적으로 확정될 예정임

3) 「지방재정법」 제18조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② (생략)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4) 「서울특별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6조(재정안정화 계정의 재원과 용도)

② 재정안정화 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하고, 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로 전출하여 사용할 수 있다.

2.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사채 또는 공단체의 상환을 위해 출자금, 보조금 또는 융자금

5) 지방재정법 제18조의 출자·출연시 지방의회 사전의결 관련 해석기준 통보(행정자치부 재정정책과 -5653호, '15.10.20.)

- 보조금과 달리 출자·출연은 정산을 의무화하지 않기 때문에 지원 절차를 강화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선심성·낭비성 출자·출연을 방지하려는 취지에서, 지방의회가 출자·출연 대상기관의 사업내용, 필요성, 출자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승인하는 것으로 출자 금액을 확정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님

■ 2023년 지하철 분야 출자 내용 - [붙임] 참고

- 서울시는 2023년 본예산으로 3,021억 37백만원을 서울교통공사 출자금으로 편성한 바 있으며, 2023회계연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총 913억 89백만원(30.2%)을 추가 증액하여 출자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업내용은 지하철 1~4호선 노후시설 재투자(25억 13백만원), 지하철 5~8호선 노후시설 재투자(35억원), 지하철역 승강편의시설 설치(191억 34백만원), 지하철 공기질 개선(151억 82백만원), 노후전동차 교체(510억 6천만원)로 출자하는 추경편성에 대해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임

※ 서울시 지하철 분야 출자 동의안 안전투자사업 관련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 2021년 | | | 2022년 | | | 2023년 | | |
|---------------------|---------|---------|--------|---------|---------|--------|----------|---------|--------|
| | 합 계 | 본예산 | 추경 | 합 계 | 본예산 | 추경 | 합 계 | 본예산 | 제1회 추경 |
| 합 계 | 155,922 | 116,468 | 39,453 | 168,319 | 131,414 | 36,905 | 3,02,258 | 210,869 | 91,389 |
| 지하철 1~4호선 노후시설 재투자 | 64,191 | 64,191 | - | 27,653 | 26,653 | 1,000 | 41,740 | 39,227 | 2,513 |
| 지하철 5~8호선 노후시설 재투자 | 26,950 | 26,950 | - | 20,838 | 19,877 | 961 | 43,450 | 39,950 | 3,500 |
| 지하철역 승강편의시설 설치 | 22,927 | 17,050 | 5,877 | 30,896 | 11,649 | 19,247 | 69,092 | 49,958 | 19,134 |
|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 | 18,909 | 8,277 | 10,631 | 61,729 | 46,032 | 15,697 | 23,185 | 8,003 | 15,182 |
| 서울교통공사 노후전동차 교체(국비) | 22,945 | - | 22,945 | 27,203 | 27,203 | - | 124,791 | 73,731 | 51,060 |

- 이와 함께 서울교통공사 부족자금 해소를 위해서 일시차입금(공사채)의 일부인 1,550억원을 '서울특별시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을 활용하여 현금출자 형태로 지원받아 상환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제2항6)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의회의 동의를 필요함

■ 출자 동의 필요성

- '17년 5월 설립된 서울교통공사는 '23년 6월 기준 서울 지하철 1~8호선, 9호선 2·3단계 구간(275역, 289.1km, 전동차 3,613량)을 운영하며 일평균 약 5,901천명을 수송하고 있는 서울의 대표 공기업으로 수도권 주민의 주요 교통수단으로 자리매김 하고 있음
- 서울교통공사는 코로나19 발생에 따른 이용승객 감소 등으로 '22년 기준 당기순손실 6,420억원, 부채 6조 5,570억원을 기록7)하였으며 수송원가 대비 평균운임율8)은 53.2%에 불과

6)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기금운용계획의 변경)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생략)

7) 서울교통공사 재무상태

(단위 : 억원)

| 구 분 | 2017년 | 2018년 | 2019년 | 2020년 | 2021년 | 2022년 |
|-------|---------|---------|---------|---------|---------|---------|
| 자 산 | 131,342 | 132,424 | 131,990 | 133,403 | 150,840 | 154,227 |
| 부 채 | 46,056 | 51,202 | 46,455 | 62,534 | 66,072 | 65,570 |
| 자 본 | 85,296 | 81,223 | 85,535 | 70,868 | 84,768 | 88,657 |
| 당기순손실 | △5,253 | △5,389 | △5,865 | △11,137 | △9,644 | △6,420 |
| 누적적자 | 138,769 | 144,158 | 149,547 | 160,684 | 170,328 | 176,748 |

8) 지하철 일인당 수송원가

('22년 기준, 단위 : 원)

| 구 분 | 수송원가 | 평균운임 | 부족액 | 수송원가 대비 평균운임율 |
|--------|-------|-------|-----|---------------|
| 서울교통공사 | 1,904 | 1,014 | 890 | 53.2% |

※ 수송원가 = 총괄원가(영업비용+자본비용(관리운영권상각비 미포함))/수송인원(승차인원기준)

※ 평균운임 = 운수수입/승차인원

※ 부족액 = 수송원가-평균운임

※ 수송원가대비 평균운임율 = 평균운임/수송원가

한 실정이며, 특히 노인·장애인·유공자 등 법정 무임승차 공익 서비스에 따른 손실⁹⁾로 만성적인 재정적자가 발생하고 있지만 서울교통공사 자체의 운영수입과 영업활동만으로는 서울 지하철의 만성적인 재정적자를 줄이고 안정적으로 운영하기에는 어려운 실정임

- 특히, '74년 8월 15일 1호선(서울역~청량리 구간)이 개통된 이후 약 40년 이상 시민들에게 '안전'과 '편리'라는 기본에 충실한 수준 높은 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시설 노후화의 급속한 진행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노후 시설에 대한 재투자가 시급하다는 점, 교통복지 확보 차원에서 미세먼지에 따른 공기질 개선, 이동 편의성 증진을 위한 승강편의 시설 설치 등의 사업에 대해 지속적이고 꾸준한 시설 투자가 요구되는 상황이나 서울교통공사 자체적으로 추진이 불가능하다는 점 등을 비추어 본다면 최소한의 필요예산에 대한 출자 동의 필요성은 인정된다 할 것임

-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활용하여 서울교통공사의 일시차입금(공사채) 1,550억원을 상환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공사의 2023년 부족자금 예상규모가 약 1조 6,757억원임을 감안한다면 기금 출자

9) 법정 무임승차 손실비율 현황(최근 5년간)

(단위: 억원)

| 구 분 | 연평균 | 2017년 | 2018년 | 2019년 | 2020년 | 2021년 |
|-----------|-------|-------|-------|-------|--------|-------|
| 당기순손실(a) | 7,458 | 5,253 | 5,389 | 5,865 | 11,137 | 9,644 |
| 무임승차손실(b) | 3,236 | 3,506 | 3,540 | 3,709 | 2,643 | 2,784 |
| 손실비율(b/a) | 49.6% | 66.7% | 65.7% | 63.2% | 23.7% | 28.9% |

등을 통해 공사의 추가 부족자금을 해소하고, 재정 안정화를 도모한다는 측면에서 그 필요성은 인정된다 보여짐

참고로 공사·공단경상전출금¹⁰⁾의 형태로 지원한 바 있으나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내 출자금을 활용하여 서울교통공사의 일시 차입금(공사채)을 상환하는 사례는 처음임

※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운용계획 변경(안) 지출계획

[의안번호: 902, 2023.5.30.제출]

(단위:백만원, %)

| 정책사업 / 단위사업 / 세부사업 / 편성목 | 당 초 (A) | 기 금 운 용 계획 변경안(B) | 증 감 (C = B - A) | 증 감 율 (D = C / A) |
|--------------------------|------------|----------------------|--------------------|----------------------|
| 합 계 | 1,820,723 | 2,875,087 | 1,054,364 | 57.9 |
| 효 율 적 재 정 운 영 | - | 155,000 | 155,000 | - |
| 공사·공단 상환 지원 | - | 155,000 | 155,000 | - |
| 서울교통공사 출자 지원 | - | 155,000 | 155,000 | - |
| 출 자 금 | - | 155,000 | 155,000 | - |
| 재 무 활 동 | 1,820,513 | 2,719,877 | 899,364 | 49.4 |
| 내 부 거 래 지 출 | 160,000 | 160,000 | - | - |
| 보 전 지 출 | 1,660,513 | 2,559,877 | 899,364 | 54.2 |
| 여 유 자 금 예 치 | 196,923 | 1,096,287 | 899,364 | 456.7 |
| 예 치 금 | 196,923 | 1,096,287 | 899,364 | 456.7 |
| 지방채 차입금 원금 상환 | 1,419,042 | 1,419,042 | - | - |
| 지방채 차입금 이자 상환 | 44,548 | 44,548 | - | - |
| 행 정 운 영 경 비 | 210 | 210 | - | - |

10) 2023년 예산서(세출예산-도시교통설 도시철도과)

| 정 책 | 단 위 | 세부사업명 | 2023년 예산 | 예산과목 및 내역 |
|--------------|----------------|--------------|------------|-------------------------------------------|
| 도시철도 관리 및 개선 | 도시철도건설사업비 특별회계 | 서울교통공사 서비스개선 | 200,000백만원 | (201-309-01) 공사·공단경상전출금 - 서울교통공사 유동성 긴급지원 |

- 동 동의안의 의결은 관련법에 의거하여 출자 내용과 필요성 등을 검토하여 출자 여부를 사전 승인하는 것으로 향후 예산심의 등을 통해 서울교통공사 매칭예산 투입여력, 국비지원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며

아울러 서울시는 출자된 예산을 철저히 관리·감독하여 사업추진과 예산집행이 적절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서울교통공사는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 부문별 부족 자금에 대한 자구대책 방안을 세부적으로 마련하여 출자금의 효율적 사용과 함께 재정건전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할 것임

[붙임] 서울시 지하철 분야 출자 동의안 관련 세부 현황

○ 안전투자사업 출자: 914억(2023년 1차 추경예산안)

(단위: 천원)

| 구 분 | 2023년 (기정예산) | 2023년 (1차 추경예산안) | 반영시 | 비 고 |
|----------------------------------------|-----------------|---------------------|-------------|------------------------------------|
| 합 계 | 302,136,194 | 91,389,755 | 393,525,949 | |
| 지하철 1~4호선 노후시설 재투자 | 39,226,600 | 2,513,455 | 41,740,055 | 국비 미매칭분 일부(통신) - 전체 5개분야 20개 사업 |
| 지하철 5~8호선 노후시설 재투자 | 39,950,500 | 3,500,000 | 43,450,500 | 노후 신호설비 추가 - 전체 6개분야 14개 사업 |
| 지하철역 승강편의시설 설치 | 49,958,000 | 19,134,000 | 69,092,000 | 1호선 13역 공사비 증액 |
|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 | 8,003,310 | 15,182,300 | 23,185,610 | '22년 국비 미매칭분 |
| 서울교통공사 노후전동차 교체 (국비) | 73,731,504 | 51,060,000 | 124,791,504 | 국비매칭(6차, 5.8호선 298칸) |
| 지하철역 화장실 확충 | 1,282,650 | | | |
| 지하철 4호선 노후전동차 교체 | 52,783,380 | | | |
| 서울지하철 스마트관제센터 구축 | 18,917,250 | | | |
| 가산디지털단지역 출입구 신설 및 확장 | 1,800,000 | | | |
| 지하철역 출입구 캐노피 설치 | 3,210,000 | | | |
| 지하철 역사 환경개선 | 2,350,000 | | | |
| 1호선 전동차RFID자동질환장치 설치 | 800,000 | | | |
| 2,3호선 전동차대용량콘덴서 교체 | 500,000 | | | |
| 서울교통공사 변전소 전력감시시스템 구축 | 900,000 | | | |
| 지하철 공기질 관제센터 구축 타당성 조사 | 33,000 | | | |
| 지하철 역사 스크린도어 검지장치 (바닥센서) 시스템 시범사업 | 2,500,000 | | | |
| 잠실철교 방호울타리 개선 | 500,000 | | | |
| AI 기반 실시간 혼잡도 평가 및 운영 지원시스템 개발 | 500,000 | | | |
| 군자차량기지 유기용제에 의한 산업재해 예방 및 근무환경 개선사업 | 500,000 | | | |
| 승객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승강장 안전문 기동문 감시시스템 구축 | 1,000,000 | | | |
| 6호선 IPM 개량사업 | 1,320,000 | | | |
| 서울교통공사 화재 초동진화용 자동 소화패치 도입 | 700,000 | | | |
| 2호선 280량 객실의자 커버 교체 | 1,400,000 | | | |
| 구의~강변 고가부 레일코팅 | 270,000 | | | |

○ 서울교통공사 채무상황 출자: 1,550억원(통합재정안정화기금)

5.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6. 토론요지 :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8. 소수의견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 서울교통공사 출자 동의안

| | |
|----------|-----|
| 의안 번호 | 888 |
|----------|-----|

제출년월일 : 2023년 5월 30일
제출자 : 서울특별시장

1. 제안이유

- 가. 서울시는 시민들에게 더욱 안전하고 편리한 지하철 이용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지하철 분야에 출자기관인 서울교통공사를 운영하고 있음
- 나. 이에 시민 안전 제고 및 지하철 이용환경 개선을 위하여 지하철 노후시설 재투자, 승강편의시설 설치 등 주요 사업을 2023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
- 다. 서울교통공사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하여 차입금액 중 일부를 현금 출자를 통해 상환할 수 있도록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사전에 그 동의를 얻으려는 것임

2. 제안내용

가. 출자개요

- 대상기관 : 서울교통공사
- 출자규모 : 2,464억 원 (안전투자사업 914억, 차입금상환 1,550억)
- 추진근거 : 「지방재정법」 제18조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나. 출자 현황

① 주요 안전투자사업 : 914억 원

(단위 : 천원)

| 구분 | 본예산 | 추경안 | 반영액 | 비고 |
|---------------------|-------------|------------|-------------|------------------------------------|
| 계 | 302,136,194 | 91,389,755 | 393,525,949 | |
| 지하철 1~4호선 노후시설 재투자 | 39,226,600 | 2,513,455 | 41,740,055 | 국비 미매칭분 일부(통신) - 전체 5개분야 20개 사업 |
| 지하철 5~8호선 노후시설 재투자 | 39,950,500 | 3,500,000 | 43,450,500 | 노후 신호설비 추가 - 전체 6개분야 14개 사업 |
| 지하철역 승강편의시설 설치 | 49,958,000 | 19,134,000 | 69,092,000 | 1동선 13역 공사비 증액 |
| 서울교통공사 지하철 공기질 개선 | 8,003,310 | 15,182,300 | 23,185,610 | '22년 국비 미매칭분 |
| 서울교통공사 노후전동차 교체(국비) | 73,731,504 | 51,060,000 | 124,791,504 | 국비매칭(6차, 5.8호선 298칸) |
| 기타사업 (출자변동 없음) | 91,266,280 | - | 91,266,280 | 지하철역 화장실, 캐노피 등 |

② 서울교통공사 채무상환 : 1,550억 원

다. 출자의 필요성

- 서울시 지하철은 하루 6백만명 이상의 시민들이 이용하는 가장 대중적인 교통수단이나, 개통 후 30년 이상 경과됨에 따라 시설 노후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고, 특히 「중대재해처벌법」 상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시설개선이 필요함
- 반면 수송원가(1,904원) 대비 평균운임(1,014원) 비율이 53%('22)에 불과하여 지하철 운행에 따라 손실이 발생하고 있을 뿐 아니라 국가정책 및 관련 법에 따른 공익서비스 비용('22년 3,152억 원) 부담으로 서울교통공사 재정여건은 매우 열악한 상황임

- 이에, 노후시설 개선 등 안전관련 사업을 단절없이 추진하고, 서울교통공사의 차입금 중 일부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상환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출자에 대한 동의를 얻고자 함.

3. 참고사항

가. 출자 대상기관 개요(현황)

기관현황

- ▶ 설립일자 : 2017. 05. 31
- ▶ 설립목적 : 지하철 건설·운영(서울지하철 1~8호선) 및 부대사업
도시교통 발전과 시민복리 증진
- ▶ 위 치 : 서울시 성동구 천호대로 346(용답동)
- ▶ 조 직
- 본 사 : 6본부, 6실, 42처 / 현 업 : 1부문, 2원, 1단, 10센터, 58사업소
- ▶ 인 원 : 정원 16,387명/현원 16,227명 ('23.3.31.기준)

나. 예산조치 : 2023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세출예산 및 2023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에 서울특별시 서울교통공사 출자금 반영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끝.

※ 작성자 : 도시철도과 도시철도총괄팀 손동민(☎2133-4343)
김남현(☎2133-4335)